

# 종교인 과세 어떻게 시행되나

최호윤 | 삼화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과 교회재정건강성 실행위원장으로 교회 건강 재정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안들을 연구 검토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세법이 개정되었다. 과거 1968년 7월에 국세청장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도 과세하지 않다가, 2006년 2월 시민단체가 종교인 납세를 사회문제로 본격화한 이후 거의 10년 동안 왈가왈부할 만큼 적용하는 개정 세법체계 또한 논리적이기보다는 교계 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아우르는 임기응변적이어서 당사자인 목회자들에게겐 어렵고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 1.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급여·사례비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았지만, 매월 189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는 경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담할 소득세액이 없으므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과할 가산세가 없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서는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세법이 적용되면 소득세법 제21조 1항에 의거, 기타소득인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지역교회에 소속된 목회자가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되어 개정 세법에서 열거한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이 된다.

지급하는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급한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므로 지급액이 25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의

4.4~17.6%를 사례비 지급 시마다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목회자 스스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고, 목회자 스스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무신고 및 미납부 상태가 되어 가산세 대상이 된다.

### 2. 교회는 선택적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지만 종교인 소득의 경우, 교회가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종교기관인 교회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 스스로가 수령한 사례비를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해당되는 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교회는 원천징수 신고납부 시기를 매월 단위 또는 6개월(반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 3. 식사대,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 이외의 지급액은 과세 소득으로 분류

목회활동 관련 교육비, 여비교통비, 목회자가 제공받은 식사 또는 월 10만 원 이내의 식대 수령액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소득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지출증빙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목회도서비, 목회활동비 등은 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된다.

### 4. 교회 명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교회가 교회 명의의 사택을 목회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교회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목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목회자 개인 명의일 경우 시가와와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 5.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소득구간별

#### 차등 필요경비율 적용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12배수 금액을 연간소득으로 환산한 후 아래 구간별로 필요경비율을 적용한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 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1,600만 원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2,600만 원 +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 원 초과	3,200만 원 +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예를 들어 특정월의 사례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과 지급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항목	금액	내역
A. 월 사례비 금액	2,000,000	
B. 연간 환산금액(A × 12월)	24,000,000	
C. 필요경비	18,000,000	1,600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의 50%
D. 연간단위 추정소득금액(B-C)	6,000,000	
E. 원천징수세액	1,320,000	(소득세: 120만 원, 지방소득세: 12만 원)
F. 월 단위환산 원천징수세액(E/12월)	110,000	(소득세: 10만 원, 지방소득세: 1만 원)
G. 원천징수 후 지급할 금액(A-F)	1,890,000	

목회자 사례비에 대해 정부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두 가지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열어둔 상태이므로 이제는 목회자가 종교인소득에 대한 관련세법 규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때다.

## 6. 외부강사 원천징수

외부강사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므로, 지급하는 교회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거나, 수령한 목회자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종합소득으로 포함시켜 신고해야 한다. 외부강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여비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되며, 외부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비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미납부세액의 3% + 연리 10.95% 상당의 이자액) 부과 대상이 된다.

## 7. 개정세법 적용 대상자

종교인 소득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한 소득에 한정되므로 교회의 일반 행정사무원은 개정된 기타소득규정과는 무관하다.

## 8. 중소형 미자립교회

행정사무원을 별도로 둘 수 없는 중소형 미자립교회로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수령하는 목회자가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든 기타소

	근로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자	교회가 지급 시마다 원천징수	교회가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교회가 하지 않는 경우 목회자 본인이 신고
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 간이세액조건표에 따라 징수(4인 가족 기준 월 188만 원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이 없음)	지급액을 연간단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한 후 원천징수세액 결정(월 188만 원 지급 시 48,400원 원천징수)
소득 확정 절차 (종합소득신고)	지급자인 교회가 연말정산하면 종합소득신고 절차 완료	목회자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소득세 계산 구조	일반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기부금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이 적용됨	연간 기타소득 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을 적용한 과세소득 계산
사회보험료	근로소득자이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가 된다.	독립된 별개 소득자이므로 교회단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다.

득으로 신고하든 종합소득으로 부담할 세액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를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매월(또는 6개월) 단위로 교회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하더라도 추가적인 세액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 9. 교회가 대비해야 할 사항

교회가 지역교회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지역교회 단위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고유번호를 이미 등록하였다는 전제로 다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교회가 소속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가 지역교회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지역교회가 목회자가 수령하는 사례비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실제적 적용효과 측면에서 위의 표와 같은 차이가 있다.

둘째, 교회가 매월 원천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목회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다른 조

직과 달리 사례비 지급 시 교회가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목회자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목회자 개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역교회 또는 지방회, 교단 차원에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세무신고절차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든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연말정산 절차 또는 종합소득신고 절차를 교회 또는 목회자가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유번호 등록 뿐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가입하고 신고절차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 기업체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신고절차에 비하면 어렵지 않으므로 유형별 신고·납부 원리와 절차를 미리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전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소득세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 무신고, 무납부에 해당되어 세법을 위반하게 된다. 목회자 사례비에 대해 정부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두 가지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열어둔 상태이므로 이제는 목회자가 종교인소득에 대한 관련세법 규정 절차를 이행해야 할 때다. 심

